

심 사 보 고 서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3
----------	-----

2015. 10. 21.(수)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2일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가. 제안이유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예정액 : 57,2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기준보조율)	2015년			2016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52,000	52,000	0	57,200	5,200

- ※ 산출근거 : 2016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요청('15.8.17, 한국지역진흥재단)
- 17개 광역자치단체 출연금 1,459.7백만원 중 57.2백만원(3.9%) 배정
- 배정기준 :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수(50%) + 재정력지수(50%)

3. 검토의견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 가. 본 출연 계획안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해당 소관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소요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 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관광·문화·특산물 및 투자 정보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홍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 지역홍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충북도의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및 특산품 홍보·판매와 판로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 제안이유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재원 지원

□ 출연 예정액 : 57,200천원(도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산출근거 : 2016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요청(2015.8.17., 한국지역진흥재단)
 - 17개 광역자치단체 출연금 1,459.7백만원 중 57.2백만원(3.9%) 배정
 - ※ 배정기준 :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수(50%)+ 재정력지수(50%)

□ 출연계획(단년·반복사업)

(단위: 천원)

구분 (기준보조율)	2015년			2016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52,000	52,000	0	57,200	5,200

- 출연금 증액사유 : 물가상승, 임금인상 반영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인상(1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기관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박경배 (비영리 재단법인)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9층) - 기구 및 인력 : 2실 1센터 7팀, 38명 ○ 출연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출연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57,200천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 (기준보조율)</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15년 예산액</th> <th rowspan="2">2016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도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도비(100%)</td> <td>2016</td> <td>52.0</td> <td>57.2</td> <td>57.2</td> <td></td> <td>57.2</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산출근거 : 2016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요청(2015.8.17., 한국지역진흥재단)</p>	구분 (기준보조율)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비(100%)	2016	52.0	57.2	57.2		57.2		
구분 (기준보조율)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비(100%)	2016	52.0	57.2	57.2		57.2																		
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재단에서는 지역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홍보, 연구용역, 컨설팅 등 지역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가능 																							
지도감독부서인권(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와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재단으로 대부분의 운영비를 시·도 및 시·군·구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함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연사업계획서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2014년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경영, 경영관리, 특정시책, 주요사업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통으로 평가됨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2014년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 재정평가부분에 대하여는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의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및 연도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대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와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재단으로 대부분의 운영비를 시·도 및 시·군·구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함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

〈2015년 우리도 홍보 및 판매 등 실적〉

-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한 동영상 홍보 : 40회
- 지역홍보센터 전시관을 통한 특산품 홍보 : 44회
- 지역활성화 교육 참석 : 6명
- 지역진흥소식지, e뉴스레터 및 재단블로그를 통한 홍보 : 19회
- 연구개발 컨설팅 및 「6시 내고향」 방송홍보 : 각1회
- 지역홍보센터 지역명품관을 통한 특산품 직판 : 8건, 32백만원

③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기관명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액(최종) (C)	201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한국지역진흥재단	52	52	57.2	57.2	0	5.2

※ 출연금 증액사유 : 물가상승, 임금인상 반영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인상(10%)

2. 출연 기관현황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근거	- 법률 : 민법 제32조(비영리 재단법인) - 규칙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화번호 : 02-3496-2100		
					홈페이지 : www.kolop.or.kr		
주요연혁	- 2007. 8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 2009. 9 지역홍보센터 개관 - 2009.11 1차 기구개편(1차1실2단1센터) - 2015. 6 6차 기구개편(2실1센터)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5.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8명		20명(16명)		2명		
임원 (‘15.9.30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이사장 (선출직)	박○○	충청북도 부지사		2014.3.10. ~ 2017.3.9.		
	상임이사	주○○	(사)사랑나눔 네트워크 대표		2014.12.10.~2017.12.9.		
	비상임이사	(26명)	- 17개시도 기획관리(조정)실장(당연직)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당연직) - 7개 시군 부단체장(위촉직) - 서울신문사 편집부국장(위촉직)		-		
	감사	허○○	(現)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4,688			출연액 (단위:백만원)		
					468 (‘07년~‘15년 출연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4,977
	예산액 ²⁾	2,708	2,618	2,691		부채	289
	지자체 지원액 ³⁾	52	52	52		자본 ¹⁾	4,68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888			2,566		32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3.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균형발전과		출연	57.2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지역특산물·관광·축제·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 제공
 - 지역진흥 정책연구, 컨설팅 및 지역 인적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출연개요

- 사업명 :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출연
- 사업기간 : 2016. 1. ~ 12.
- 출연액 : 57,200천원(도비)
- 주요내용 : 자치단체별 분담 배정액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30조

□ 산출기초

- 2016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요청(2015.8.17., 한국지역진흥재단)
 - 17개 광역자치단체 출연금 1,459.7백만원 중 57.2백만원(3.9%) 배정
 - ※ 배정기준 :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수(50%)+ 재정력지수(5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468	52	52	52	52	52	52	52	52	52

□ 기대효과

- 지역특산물 판매,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지역진흥사업 추진
- 빅데이터 컨설팅, 연구용역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연 중단 시 재단의 홍보 및 지역진흥사업 중단

관계법령

□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근거

①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지원) 근거

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306 출연금 :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④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7조(운영재원) :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